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48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타	◍◍, ☎☎☎, ☏☏☏, ◆◆◆, ▭▭▭, ◈◈◈, ▰▰▰, ▲▲▲, ☜☜☜, ☞☞☞, ↘↘↘, †††, ‡‡‡, ↕↕↕, ↗↗↗

2. 조치내용

□ **(고발)** ◍◍, ☎☎☎, ☏☏☏, ◆◆◆, ▭▭▭, ◈◈◈, ▰▰▰, ▲▲▲

□ **(과징금 부과)** ◆◆◆ 1,150만원, ☜☜☜ 1억 2,500만원, ☞☞☞ 5,150만원, ↘↘↘ 2,470만원, ††† 1억 4,410만원, ‡‡‡ 1억 8,570만원, ↕↕↕ 6,910만원, ↗↗↗ 6,290만원

□ **(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통보)** ◍◍(면직 상당)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

○ ◍◍은 준내부자(△△△△△△ ▼▼▼▼▼▼)로서 ○○○○○㈜ 등 15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및 합병 결정 등 미공개중요정보(본 건 미공개정보)를 직무상 지득하고,

- ◍◍, ☎☎☎, ☏☏☏는 공모하여 본 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고 부당이득을 나누어 취득한 혐의가 있음

- ☎☎☎은 ◍◍으로부터 본 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, ◆◆◆,

▭▭▭와 공모하여 이를 이용하고 부당이득을 나누어 취득하고, ☜☜☜, ☞☞☞, ↘↘↘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이를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
- ◈◈◈는 ◍◍으로부터 본 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고, ▰▰▰과 공모하여 이를 이용하고 부당이득을 나누어 취득한 혐의가 있음

- ▲▲▲는 ◍◍으로부터 본 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고,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, ⚃⚃⚃, ↙↙↙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이를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
□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

○ ◆◆◆은 ◍◍으로부터 본 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††에게 전달하여 이를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
○ ☜☜☜는 ☎☎☎으로부터 본 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,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, ‡‡‡에게 전달하여 이를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
○ ☞☞☞은 ☎☎☎으로부터 본 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,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, ↕↕↕에게 전달하여 이를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
○ ↘↘↘은 ☎☎☎으로부터 본 건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,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, ↗↗↗에게 전달하여 이를 이용하게 한 혐의가 있음

나. 근거법규

□ (미공개정보 이용행위)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74조 제1항, 제2항, 제422조 제2항, 제424조 제3항, 제44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

□ (시장질서 교란행위)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78조의2 제1항 가목, 제429조의2 제4항